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
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1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**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(시행2015.7.1.)으로 인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통합급여)가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, 교육급여수급자로 개별급여로 보장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대상자 명칭 변경을 위해 『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』 외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일괄개정 대상

연번	자치법규명	소관부서
1	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	재무과
2	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	청소행정과

3	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	사회복지과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개정 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개별급여 대상자 보장기준이 세분화되어 ‘**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**’에서 ‘**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**’로 개정

정비 방법

- 입법형식(조례)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괄개정 추진
- 정비안 : 붙임 참조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《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전화 : 3396-5353, FAX : 3396-8730, auki@junggu.seoul.kr》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(☎3396-5353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1부.